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일부 개정(안)」 협회 의견

현행 또는 개정안		협회안		의견
항목	내용	항목	내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가. 지하매설물 보호 조치 비용 1) 판매달기 공사 비용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비용		가. 지하매설물 보호 조치 비용 1) 판매달기 공사 비용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비용 5)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안전영향평가비용	1) 전기철도, 지하철도, 지하보도, 지하상가 공사를 위한 굴착공사 시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4에 따라 가스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암파쇄방호시설 (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4) 임시방호시설 (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암파쇄방호시설 (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4) 임시방호시설 (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현장에서는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으로 연도변 건축물 등 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설계에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는바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보수·보강, 이전비용을 최소화하는 기초근거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 9호선 석촌호수 주변 건물 침하로 별첨과 같이 지침을 하달했으나 명확한 근거가 없어 도급비 반영이 안 됨)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5) 2)항을 위한 연도변 건축물 등 사전조사비용	
--	----------------------------	--	---	--

첨부 : 서울시 ‘지하철공사장 연도변 건축물관리 개선안(사본) 1부.